

팀 장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2005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2005. 6

K O T R A

통상전략팀

목 차

[요 약]	1
1. 최근 국제통상환경	5
2. 2005년 상반기 수입규제 동향.....	15
가. 총 괄 / 15	
나. 주요국별 동향 / 19	
3. 하반기 수입규제 전망	45
가. 총 괄 / 45	
나. 주요국별 전망 / 46	
□ 첨 부 : 국별/품목별 수입규제 현황표	57

요 약

1. 최근 국제 통상 환경

□ WTO에서 허용한 수입규제 조치의 활용

○ 반덤핑

- WTO 체제 출범 이후 2004년 12월 말까지 총 41개국에 의해 2,646건의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중국(411건), 한국(207건)은 최대 피소국
- 2001년 이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04년 초 이후 계속되는 원자재가격 급상승으로 인해 인도 등 주요 반덤핑 조치 활용국의 철강 및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감소 건수가 두드러짐.

○ 세이프가드

- 2001,2002년도의 비이상적으로 높았던 수준에서 대폭 감소
- 반덤핑 조치와는 달리 복잡한 산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 보다는 개도국에서 주로 활용
- 2005년 1월 1일부로 섬유쿼터제가 폐지됨에 따라 중국산 섬유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활용 빈도가 높아질 전망

○ 상계 관세

- 2004년 중 총 8건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었는데 이는 2003년 15건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임.
- 지금까지 미국, EC, 캐나다 등은 중국 등 비시장경제국가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지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이들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가 완만히 증가할 전망(캐나다 정부 2005년 상반기 중 중국산 카본스틸 스크루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

□ 섬유쿼터제 폐지 이후 세이프가드 발동 가시화

○ 미국, EU, 터키 등을 중심으로 대중국 섬유 세이프가드 발동 움직임 활발

- 미국은 현재 7개 카테고리에 대해 對中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였으며, 5개 카테고리는 수일 내 발동 전망

- EU는 중국과 2008년 말까지 3년간 중국산 의류 및 섬유증가율을 연평균 7.5%로 제한하는 것에 양국이 전격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섬유분쟁 일단락

- 터키는 42개 중국산 의류 직물에 대해 2004년 12월 23일 부로 1년간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 미국, EU의 對中 통상압력 강화

○ 미 국

- 지재권강화, 위안화 페그제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위협(Currency Act), 대중국 섬유류 세이프가드 발동

○ E U

- 자동차와 섬유 및 의류제품을 중심으로 對 중국 위협의식 확산

- 중국산 전기전자, 기계, 섬유/의류 제품 등 주종품목을 GSP 수혜대상에서 제외

2. 2005 상반기 수입규제 동향

□ 2005년 6월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 20개국으로부터 총 121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2002년 131건 -> 2003년 131건 -> 2004년 130건 -> 2005년 상반기 121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 111건, 반덤핑/상계관세 5건, 상계관세 3건, 세이프가드 2건 등임.
-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이 47건으로 가장 많고, 철강제품이 31건, 섬유류 18건, 전기전자14건, 기타 11건 등임.
- 국별로는 중국이 22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 20건, 인도 17건, EU 12건, 호주 10건, 남아공 5건 순임.

□ 2005년 상반기 중 신규 피소건은 총 7건

- 품목별로는 석유화학 3건, 철강 1건, 섬유류 1건, 전기전자1건, 기타 1건이며, 피소형태는 반덤핑 6건, 세이프가드 1건임.
- 세계적인 원자재난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한국산 석유화학 제품과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 개시 건수가 감소

□ 2005년 상반기 중 종료된 수입규제 조치는 24건임(2004년 12월말 집계시 미과약분 포함)

3. 하반기 전망

□ 2005년도 세계경제 성장세는 둔화될 전망

- IMF(2005.4)는 2005년 세계 경제가 4.3% 성장할 것으로 예측
- 내수부진 타개책으로 수출 증가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음.

□ 주요국별 하반기 수입규제 예상 품목

- 대체로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규제책 마련에 주력하여,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 압력은 상대적으로 완화될 전망
- 미국과 캐나다, 말련 등에서는 자동차, 중국에서는 화공품 및 철강, 남아공에서는 인쇄용지 및 벨브류, 호주에서는 석유화학제품 및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인도, 중남미 국가에서는 수입규제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

1. 최근 국제통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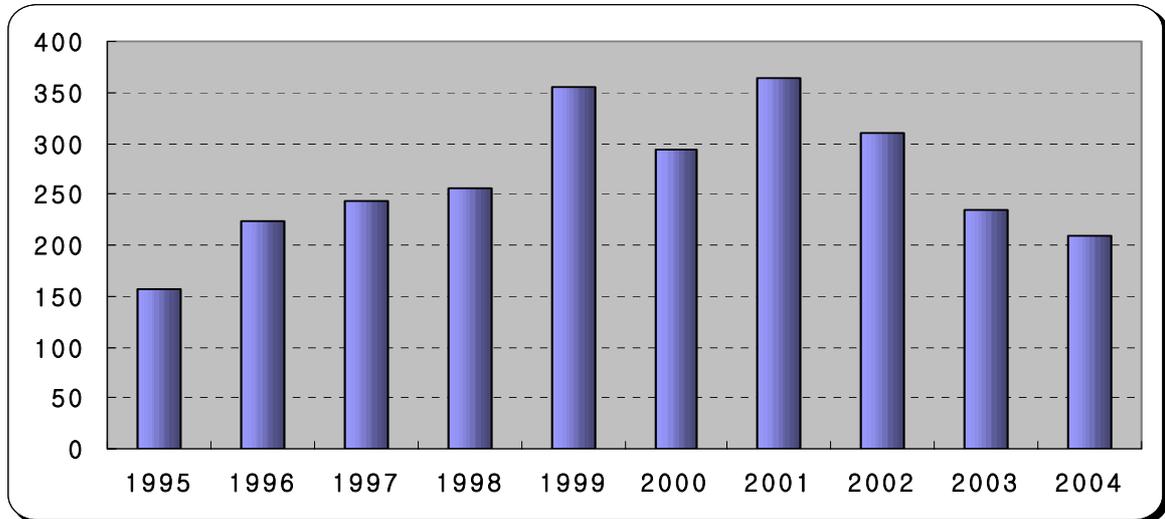
WTO에서 허용된 수입규제 조치 활용

[반덤핑]

□ WTO 체제 출범 이후 2004년 12월 말까지 반덤핑 조치 2,646건 기록

- 1995~2004년 동안 전체 41개국(EU는 1개국으로 간주하나, 슬로베니아·폴란드·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은 EU 가입 이전 반덤핑 조치를 발동한 것을 감안 개별국으로 집계)에 의해 총 2,646건의 반덤핑 조사 개시되었으며, 2004년에는 총 209건의 조사개시가 이루어짐.

<세계 반덤핑 조사개시 현황>



주) 개시기준 집계

자료원 :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WTO

- 전체 2,646건 중 411건이 중국을 상대로 개시된 조사이며, 한국은 207건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피소됨.

○ 2001년을 정점으로 하여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감소 추세

- 피소국 수 감소 추세 지속과 함께, 2004년 초 이후 지속되는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철강 및 비철금속, 화학제품에 분야에서의 반덤핑 제소 감소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됨.

<연도별 반덤핑 피소국 수 (2001~2004)>

해당년도	2001	2002	2003	2004
피소국 수	68	56	40	38

주 : 상기 표에서 “피소국” 의미는 “제소”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조사개시가 이루어졌을 경우 해당 대상국을 지칭

자료원 : WTO 반덤핑 위원회

□ 2004년 국별 반덤핑 조사 개시 현황

○ 총 19개국에 의해 반덤핑 조사가 개시

- EC가 30건으로 가장 많은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중국 (27건), 미국(26건), 터키 (25건) 등이 그 뒤를 이음.

○ 터키 발동 건수 급증, 인도 발동건수 급감

- 터키는 2003년 11건에서 2004년도 25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하였는데, 이는 2003년도에 거의 對中 반덤핑 조사개시가 주류를 이뤘던 반면(4개국, 11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는데, 중국산은 8개 품목에 대하여 조사 대상),
- 2004년에는 중국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도 섬유류 및 PET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11개국, 12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사 개시)했기 때문임.
- 인도는 2003년도 최다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인 46건을 기록하였으나, 2004년에는 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1건을 개시하는 데 그침. 이는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급상승으로 인해 공급량이 줄어들어 따라, 동 산업에서의 반덤핑 제소가 감소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2004년 품목별 반덤핑 조사 개시 현황

- 예년과 마찬가지로 개시된 반덤핑 조사 대상품목을 분류시, 화학제품, 플라스틱/고무, 철강/비철금속, 의류/직물 등이 주된 타겟인 것으로 나타남.

<품목별 반덤핑 조사 개시 현황(2001~2004)>

산업	'01		'02		'03		'04	
	개시건수	%	개시건수	%	개시건수	%	개시건수	%
화학제품	66	18.1	94	30.3	70	29.9	50	23.9
플라스틱/ 고무	55	15.1	42	13.5	25	10.7	43	20.6
철강 /비철금속	134	36.8	95	30.6	52	22.5	35	16.7
의류/직물	26	7.1	6	1.9	14	6	21	10.0
전기/전자	25	6.8	9	2.9	14	6	4	1.9
제지류	7	2.7	7	2.2	20	8.6	8	3.8
총계 (기타 포함)	364	100	310	100	234	100	209	100

자료원 :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WTO

- 중국, 인도 등의 BRICs 국가들의 고성장에 필요한 원자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화학제품 및 철강/비철금속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현저히 감소
- 의류/직물의 경우 2005년 1월 1일 시행된 섬유쿼터 해제에 대비하여, 반덤핑 조사 개시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세이프가드]

□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건수가 기존의 비이상적으로 높았던 수준에서 감소

< 연도별 세이프가드 조사 및 발동 현황 >

(단위: 건)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4	계
조사개시	2	5	3	12	13	24	14	34	15	13	3	138
SG발동	-	1	3	4	6	7	11	14	16	5	2	69

자료원 : WTO 회원국의 최근 세이프가드 조치 동향(2005.5), 무역위원회

-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에 의해서 촉발된 도미노 현상 때문에 2001, 2002년에는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건수가 급증하였으나, 2003년 미국의 SG 조치 철회 이후 감소 추세 지속

□ 개도국에 의한 활용이 두드러짐.

- 조사개시 138건중 121건(88%), 발동된 69건중 60건(87%)이 개도국 조치

< 국가별 세이프가드 조사 및 발동 현황 >

(단위: 건)

구 분	인 도	미 국	칠 레	체 코	필리핀	요르단	E U	한 국	기타	계
조사개시	15	10	10	9	6	10	3	4	73	138
SG발동	8	6	6	5	5	4	3	2	35	69

자료원 : WTO 회원국의 최근 세이프가드 조치 동향(2005.5), 무역위원회

- 세이프가드 조치는 반덤핑 조치와는 달리 덤핑 마진율을 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입국 정부가 손쉽게 자국 산업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도국에서 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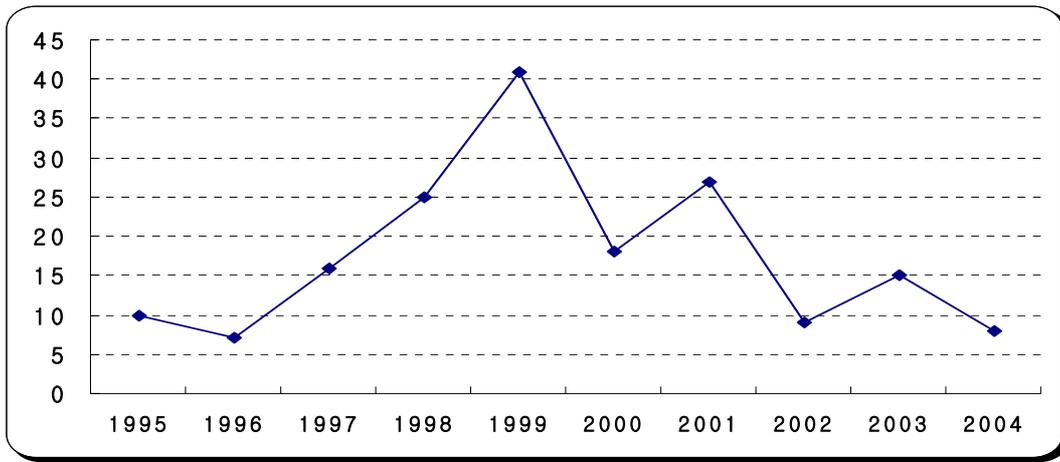
□ MFA 쿼터가 2005년 1월 1일 부로 완전 해제됨에 따라 섬유 산업에서 반덤핑 조치와 함께 세이프가드 조치의 사용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반보조금/상계관세]

- '03년 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는 전년대비 약간 증가하였으나, '04년 조사 개시 건수는 이의 절반에 못 미침.

<연도별 상계관세 조사개시 현황>

(단위 : 건)



주) 상기 건수는 조사 개시 기준

자료원 :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WTO

- 상계관세 조치는 적절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됨.
 - 반덤핑 조사는 수출국 산업만을 대상으로 하나, 반보조금 조사는 수출국의 산업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함께 조사하기 때문에 좀 더 정치적으로 민감한 특성을 지니게 됨.
 - 덤핑 마진 계산보다, 보조금 계산법은 아직 덜 발달된 상태이므로, 수입국 정부가 보조금 계산을 위해 덤핑 마진 산정법을 원용할 경우 WTO에 제소될 가능성이 높음.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시장 경제국가(non-market economy status)로 분류된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상계관세 조사 개시가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캐나다, EC 등은 이제까지 수출국이 비시장경제국으로 분류되는 경우, 상계관세 조치의 적용이 불가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나, 동 관점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04년 캐나다는 중국을 대상으로 2건의 상계관세 부과

- ☞ 캐나다무역재판소는 최근 판결을 통해 캐나다로 수출되는 중국산 카본 스틸 스크루 등 파스너에 대해 중국 정부의 보조율을 32%로 결정하고 품목에 따라 최고 170%의 반덤핑 관세와 함께 킬로그램당 18센트 (약 US\$ 0.14)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美하원은 최근 중국 위안화 페그제가 WTO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며, 美 통상법에 의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Currency Act)

섬유쿼터 해제 이후 세이프가드 발동 가시화

- 섬유쿼터제 2005년 1월 1일 부로 전면 폐지
 - WTO 섬유협정(ATC)이 종료됨에 따라 각국은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던 섬유쿼터제를 완전 폐지
-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대중국 섬유 세이프가드 발동 가시화
 - 중국 WTO 가입시 체결조약의 특별조항(중국가입에 관한 작업반 보고서, 대중국 섬유 특별세이프가드 관련)제11조 섬유부분에 근거
 - 미국의 CITA(섬유협정이행위원회)는 시장교란(market disruption) 위협을 이유로 현재 중국산 7개 품목에 대해 2005년 12월 31일까지 세이프가드 발동

<미국, 對중국 섬유 세이프가드 발동 및 청원 현황>

발동일자	품 목	조치 적용기간	
'05.5.23	면 니트셔츠 및 블라우스(338/339)	'05.12.31까지	
	면 바지(347/348)		
	면 및 인조사 내의류(352/652)		
'05.5.27	인조사 니트셔츠와 블라우스(638/639)		
	인조사 바지(647/648)		
	Combed 면 원사(301)		
	남성,남아용 면 및 인조사 Woven 셔츠(340/640)		
6월 중 발동 예상	기타 인조사 필라멘트 원단(620)		-
	남성, 남아용 울바지(447)		
	니트 원단(222)		
	면 및 인조사 브래지어(349/649)		
	면 및 인조사 드레싱가운(350/650)		

자료원 : OTEXA (The Office of Textiles and Apparels)

- EU는 대중국 섬유 SG 발동 기준 등 EU내 법적 근거 마련 및 의류 9개 품목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여 양 국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으나, 최근 2008년 말까지 3년간 중국산 의류 및 섬유증가율을 연평균 7.5%로 제한하는 것에 양국이 전격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섬유분쟁 일단락
- 터키는 42개 중국산 의류 직물에 대해 2004년 12월 23일 부로 1년간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 중국 가입에 관한 작업반 보고서 제 11조 섬유 부분 발췌

○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이전, 중국산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하여 부과된 수량 제한 조치는 섬유 감시기구(TMB)에 통보되어 WTO 섬유협정 2,3조의 base level로 사용됨.

○ 하단의 조항은 중국산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해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중국 WTO 가입 조건의 일부가 됨.

(a) ATC 협정에 포함되는 섬유 및 의류제품을 대상으로 WTO 회원국 내에서 중국산 제품으로 인해 시장 교란(market disruption) 및 동 제품 교역의 질서 있는 발전을 저해할 위협(threatening to impede the orderly development of trade)이 있는 경우 해당 회원국은 이러한 시장 교란을 완화하거나 막기 위하여 중국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동 회원국은 협의 요청 시점에 협의요청에 대한 상세한 사실적 이유를 중국에 제시하여야 함. (현재 데이터 첨부). 동 데이터는 (1)시장교란의 존재 혹은 위협, (2) 중국산 제품이 교란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야 함.

(b) 협의 요청이 접수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이가 개최되어야 함. 동 협의 요청 접수 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상호간에 만족할 만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함.

(c) 협의 요청 접수 후, 중국은 협의요청이 있는 달 이전, 가장 최근 14 개월 중 처음 12개월 내에 수입된 양의 7.5%를 초과하지 않는 (울 제품 카테고리의 경우 6%) 수준에서 협의 요청 품목의 수출량을 제한하기로 합의

(d) 90일 협의 기간 동안 상호간에 만족할 만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협의는 지속되며, 협의를 요청한 회원국은 (c)항의 제한을 지속적으로 부과

(e) (d)항에 의해 부과된 수량 제한은 협의요청이 개시된 시점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나, 협의요청~12월 31일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협의 요청 이후 12개월 간 유효

(f) 동 조항에 의해 부과된 제한 조치는 1년 이후 효력을 상실하며, 중국과의 별도 협의가 없는 한 제한조치를 재적용 할 수 없음.

(g) 동 조항에 의거하여 부과된 수량 제한 조치와 Draft Protocol의 Section 16에 의거한 제한조치는 동시에 부과될 수 없음.

미국, EU 對中 통상압력 강화

[미 국]

□ 미국의 對中 무역수지 적자 확대 심화

(단위 : 백만 US\$, %)

	2002	2003	2004	2005(1~4)
對中 무역수지	-103,064.7	-124,068.2	-161,937.9	-56,744.5
총 무역 수지	-468,262.8	-532,350.3	-650,929.5	-225,331.3
對中 무역수지 적자 비중	22.0	23.3	24.9	25.2

자료원 : WTA(World Trade Atlas)

□ 對中 무역역조 심화 따른 미국 의회 및 업계의 불만 표출 심화

- 섬유 세이프가드 중심으로 對中 통상압력 강화
- 지재권 보호 압력 강화
 - 지재권 침해행위 감시 및 지재권 보호관련 중국 정부 압박 목적으로 美 정부 직원을 중국에 파견, 상주시키고 있음.
- 중국 페그제를 대중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미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 조작 국가로 지정할 수 있음을 시사
 - “환율 조작국”지목 자체는 양국간 관련 협의를 촉발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기 때문에 상징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계기로 미국의 對中 무역보복 조치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또한 앞서 언급한 “Currency Act”를 통해 저평가된 위안화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 추진

[E U]

□ 자동차와 섬유 및 의류제품을 중심으로 對 중국 위협의식 확산

- 여러 언론이 빈번하게 EU와 중국 측의 움직임을 보도하는 한편, 유럽 관련 산업계는 물론이고 일반 소비자들도 중국산이 쇠도하고 있음을 뚜렷이 인식하고 있음.
- 중국산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로 양국간 긴장감이 고조되었으나, 최근 수입증가율에 7.5% 상한선을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
- 금년 5월부터 중국 자동차 기업이 중국에서 제조한 자동차를 유럽으로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유럽언론과 자동차 산업계가 “중국산 자동차의 유럽 상륙”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

□ 중국산 전기전자, 기계, 섬유/의류 제품 등 주종품목을 GSP 수혜 대상에서 제외

- 향후 10년간 실시될 신 GSP 제도를 마련하면서 상기 품목을 GSP 수혜 대상에서 제외
- 분석가에 따르면, 그간 중국이 EU로부터 GSP 혜택을 받고 수출해 온 품목의 80%가 신제도하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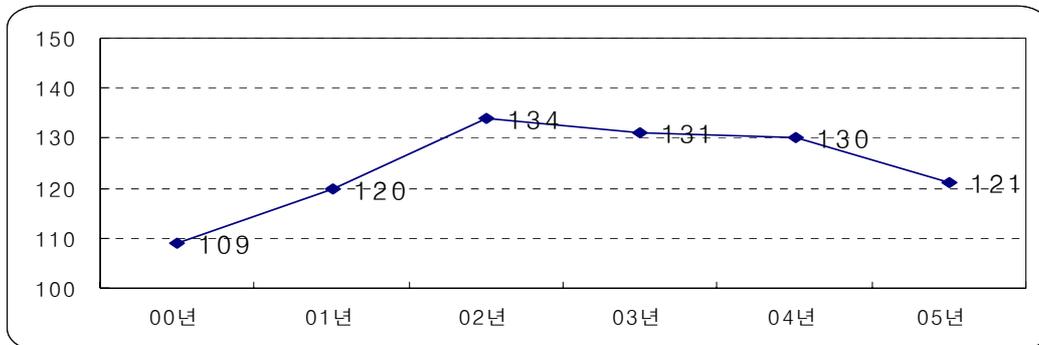
2. 2004년 수입규제 동향

가. 총괄

□ 2005년 6월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 20개국(EU는 1개국으로 간주)으로부터 총 121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121건의 수입규제 중 규제중인 것은 102건이며, 조사중(최종판정 이전까지는 모두 조사중으로 집계)은 19건임.

연도별 대한수입규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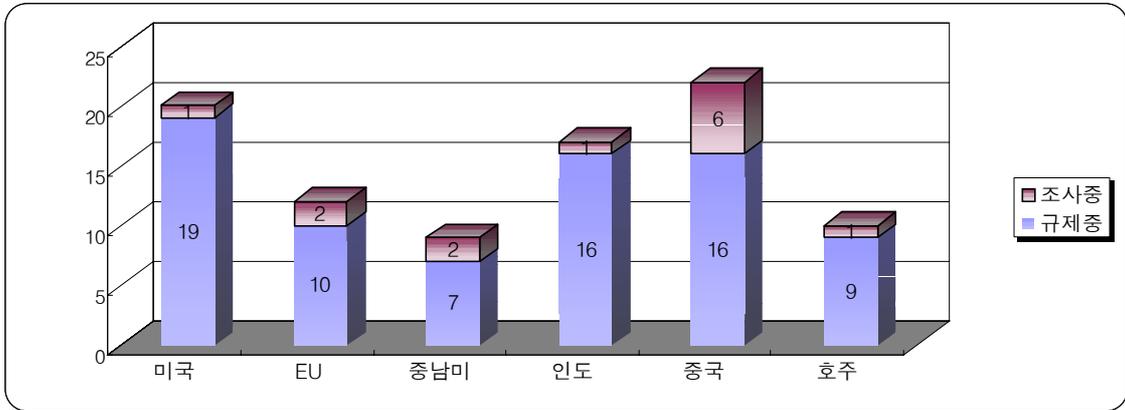


주 : 2004년말 집계시 미파악된 종료된 조치를 반영하여, 상기 표에서 2004년 총 대한수입규제 건수는 “2004년 대한수입규제 동향 및 2005년 전망”자료(2004.12)와 상이

- 2002년까지 계속되던 수입규제 확산세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 111건으로 가장 많고 반덤핑/상계관세 5건, 상계관세 3건, 세이프가드 2건 등임.
-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이 47건으로 가장 많고, 철강제품 31건, 섬유류 18건, 전기·전자 14건, 기타 11건 등임.
- 석유화학제품은 중국(16건), 인도(13건), 철강제품은 미국(14건), 호주(3건), 섬유류는 중남미(6건), 터키(5건), 전기·전자는 EU(6건)에서 주로 수입규제를 당하고 있음.

- 국가별로는 중국이 22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 20건, 인도 17건, EU 12건, 호주 10건 순임.

[주요국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 중남미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포함

- 2005년 상반기중 신규 피소 건은 총 7건임.

[2005년도 상반기 신규 피소 현황]

연번	조사개시일	피 소 품 목	제조국가	내 용
1	1.27	PET chip	말련	반덤핑
2	2월	Big-diameter pipes	러시아	세이프가드
3	4월	폴리에틸렌 수지용기	남아공	반덤핑
4	4.13	폴리우레탄(스판텍스)	중국	반덤핑
5	5.12	Polyester Filament Yarn	파키스탄	반덤핑
6	6.2	양문형 냉장고	EU	반덤핑
7	6.12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미국	반덤핑

- 품목별로는 석유화학 3건, 철강 1건, 섬유류 1건, 전기전자 1건, 기타 1건이며, 피소 형태는 반덤핑 6건, 세이프가드 1건 임.
- 2004년에 개시된 건수는 26건에 달했으나, 2005년 상반기에는 7건 개시에 불과

[연도별 신규 피소 건수 추이]

해당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 상반기
총 신규피소건수	32	27	24	17	26	7
선진국	12	8	8	5	9	2
개도국	20	19	16	12	17	5

주 : 2004년말 집계시 포함된 백설탕(러시아), BR&SBR(태국), 제주산냉동육(일본)은 제외하는 한편, 미과약된 냉장고(호주), ECH(중국) 반덤핑 조치를 반영하여, 상기 표에서 2004년 신규조사개시 건수는 “2004년 대한수입규제 동향 및 2005년 전망”자료(2004.12)와 상이

자료원 : KOTRA 수입규제 동향 및 전망

- 세계적인 원자재 난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한국산 석유화학 제품과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가 감소

□ 2005년 상반기 중 종료된 수입규제 조치는 24건임(2004년 12월말 집계시 미과약분 포함)

[2005년 상반기 종료 수입규제조치]

연번	제소국가	피 소 품 목	종료시기	규제형태
1	미 국	배관용 탄소강관	2.1	반덤핑
2	미 국	Malleable Cast Iron Pipe Fittings	2.28	반덤핑
3	캐나다	철근	1.11	반덤핑
4	캐나다	스테인레스 봉강	1.18	반덤핑
5	캐나다	탄소강관	6.3	반덤핑
6	E U	합성고무	6.15	반덤핑
7	E U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강력사	4.8	반덤핑
8	브라질	폴리에스테르 직물	'04.12.31	세이프가드
9	페 루	섬유류	5.4	세이프가드
10	호 주	HSS 강관	4.5	반덤핑
11	호 주	냉장고	6.18	반덤핑
12	인 도	광섬유	'04.12.29	반덤핑
13	인 도	자동차용 배터리	1월	반덤핑

연번	제소국가	피 소 품 목	종료시기	규제형태
14	인도	시안화나트륨	1월	반덤핑
15	인도	톨루엔	1.19	반덤핑
16	러시아	백설탕	-	-
17	남아공	스테인레스 싱크대	1.14	반덤핑
18	남아공	과산화수소	3.3	반덤핑
19	남아공	광케이블	'04.9	반덤핑
20	남아공	스테인레스 주방용품	'04.8	반덤핑
21	베네주엘라	신발류	'04.10.15	세이프가드
22	인도네시아	coated writing&printing paper	'04.7.12	반덤핑
23	인도네시아	무수푸탈산	'04.1	반덤핑
24	일본	제주산 냉동육	-	-

주 : 러시아에서는 백설탕에 대해 현재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 중이나 한국산 수출 실적 미미로 집계서 제외하는 한편, 일본의 제주산 냉동육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SPS로 상기 집계에 포함

나. 국별 동향

[미 국]

□ 2005년 6월 현재 총 20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 14건(조사중 1건), 반덤핑/상계관세 5건, 상계관세 1건
- 품목별로는 철강 14건, 석유화학 2건, 전기·전자 1건, 섬유류 1건, 기타 2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규제일자	내 용	품 목
01/20/1987	반덤핑/ 상계관세	Top-of-the-stove stainless steel cooking ware
06/05/1991	반덤핑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film
11/02/1992	반덤핑	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
12/30/1992	반덤핑	Welded ASTM A-312 stainless steel pipe
02/23/1993	반덤핑	Stainless steel butt-weld pipe fittings
08/17/1993	상계관세	Corrosion-resistant carbon steel flat products
08/19/1993	반덤핑	
08/11/1995	반덤핑	Oil country tubular goods
09/15/1998	반덤핑	Stainless steel wire rod (2003. 8 일몰재심 개시, 2004.9.13일부로 지속)
05/21/1999	반덤핑	Stainless steel plate in coils (2004. 4.1 일몰재심 개시 2004. 10. 21부로 지속 판정) - 한국산 : 포스코 포함 6.08%

규제일자	내 용	품 목
07/27/1999	반덤핑	Stainless steel sheet & strip
08/06/1999	상계관세	(반덤핑 :2004.6.1 일몰재심 개시,2004.11.15부로 지속판정, 상계관세 : 2004.6.1 일몰재심 개시, 2004.12.10일부로 지속 판정)
02/10/2000	반덤핑/ 상계관세	Carbon steel plate (2005. 1. 3일부로 일몰재심 개시)
05/25/2000	반덤핑	Polyester staple fiber (2005. 4. 1일부로 일몰재심 개시)
08/14/2000	상계관세	Structural steel beams
08/18/2000	반덤핑	(2005. 5. 1일부로 일몰재심 개시)
05/18/2001	반덤핑	Stainless steel angle
09/07/2001	반덤핑	Steel concrete reinforcing bar
03/07/2002	반덤핑	Stainless steel bar
08/11/2003	상계관세	D-RAM
10/01/2003	반덤핑	Polyvinyl Alcohol
01/28/2004	반덤핑	PC 강선
06/13/2005 (조사개시)	반덤핑	Diamond Sawblade

□ 2005년 상반기 중 대한 수입규제 신규 조사개시건수는 1건임.

- 2005년 5월 3일 미국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제조업체 연합은 한국산, 중국산 다이아몬드 절삭공구(Diamond Sawblade)에 대해 반덤핑 제소, 미 DOC는 6월 13일 조사개시 결정

품 명	HS 코드	유 형	조사개시	판정일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8202.39	반덤핑	'05.6.13	-

- 한국 피소업체는 이화다이아몬드 공업, 신한다이아몬드 공업, 효성 다이아몬드 공업 등임.

□ 2005년 상반기 중 총 2건의 반덤핑 규제 철회

- 배관용 탄소강관(Certain Circular Welded Carbon Quality Line Pipe)에 대한 제소 철회

- 2005년 2월 1일 제소 업체들의 제소 철회로 인해 무역위원회 조사종결

- 일몰재심 결과 1986년 5월 23일부터 Malleable cast iron pipe fittings 에 부과되던 반덤핑 관세를 2005년 2월 28일자로 철회

[캐나다]

- 2005년 6월 현재 총 2건의 반덤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두 철강제품에 대한 것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유 형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비 고
구조용강관 (HS 7306류)	반덤핑	'03.5.21	'03. 8.19	'03. 11.17	-
스테인레스강선 (HS 7223류)	반덤핑	'03.11.21	'04. 4.2	'04. 7. 30	모든 수출자 181% 부과

- 2005년 상반기에 신규 조사개시된 품목은 없으며, 철근(2005.1.11), 스테인레스 봉강(2005.1.18) 및 탄소강관(2005.6.3)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철회되는 등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 대폭 완화

-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건축 경기의 호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세계적인 철강부족 사태로 철강의 국내 수요 급증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캐나다 서부에서 에너지 개발 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수송용 파이프라인의 건설에 필요한 각종 철강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역시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 완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EU]

- 2005년 6월 현재 반덤핑 11건(조사중 2건), 상계관세 1건 등 총 12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품목별로는 철강 3건, 석유화학 2건, 전기·전자 6건, 섬유 1건 등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목	규제형태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 고
3.5" 플로피디스크	반덤핑	'92.9.18	'94.9.10	관세부과 기한연장
칼라TV	반덤핑	'92.11.25	'95.3.27	관세부과 기한연장
칼라TV 브라운관	반덤핑	'99.9월	'00.10.20	
주철제 관연결구류	반덤핑	'99.5.29	'00.8.18	
PET칩	반덤핑	'99.11.6	'00.11.30	'03. 5월 재심 시작 '04. 3월 기업 실사
전자저울	반덤핑	'99.9.16	'00.11.30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반덤핑	'99.10.7	'00.12.28	재심결과 반덤핑 관세율 변경(휴비스와 SK 글로벌제외 대체로 감소)
PET 필름	반덤핑	'00.5.27	'01.8.23	
철강제 관연결구류	반덤핑	'01.6.1	'02.8.24	'03.5월 관세율 인하
D-RAM	상계관세	'02.7.25	'03.8.11	관세율 : 34.8%
철강제 로프와 케이블	반덤핑	'04.11.20	-	-
양문형 냉장고	반덤핑	'05. 6. 2	-	-

- 2005년 상반기 중 양문형 냉장고에 대해 신규 반덤핑조사 개시
 - Whirlpool사가 2005.4.18일 덤핑 제소한 것이 받아들여져 EU 집행위는 2005.6.2일자로 조사개시

- 2005년 상반기 중, 합성고무와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강력사에 대한 반덤핑 조사 종료
 - 합성고무는 2004년 4월 13일 덤핑혐의로 제소되어 5월 28일자로 조사가 개시되었으나, 주EU 한국대표부에 보낸 공식서한(2005.6.15)에서 덤핑 무혐의를 근거로 조사종료를 통보
 -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강력사는 2004년 1월 28일 조사가 개시되어 미소 마진으로 2005년 4월 8일 조사 종결

- 2005년 3월 24일자로(EU관보 L78) 2002년 1월부터 실시해온 모든 수입대상국에 적용되는 철강 수입감시제도 시한을 당초 2005년 3월 말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연장 사유는 철강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EU내 철강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임.
 - 현재 240여개 철강제품(EU 관보상에 발표된 HS기준)으로 flat 제품 long 제품, 튜브 및 파이프, 반제품 등이 모두 해당

- 신발 수입감시제도 도입
 - 1월 27일자 EU 관보를 통해 중국산 신발에 대한 수입감시제도를 2월 1일부로 도입하는 동시에 모든 수입대상국에 대해서도 수입감시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다만, 실제 감시제도 발효는 우선 중국산에 대해서만 발효시키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적절한 양식과 절차가 필요하므로, 도입 시기를 지금 확정짓지 않고 2006년 1월 31일 이전에 도입할 예정
- 중국산은 금년 1월 1일부터 쿼터가 폐지된 6개 품목군에만, 모든 국가산에는 42개 품목(관보에 발표된 HS 번호 기준)

[터 키]

- 2005년 6월 현재 총 6건의 반덤핑 규제(조사중 1건)를 받고 있음.
- 이중 5건이 섬유제품에 대한 규제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對터키 수출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과거 5년간 섬유류가 전체 對터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에 이르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HS 코드	유 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반덤핑관세율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 ('04. 11. 8 일몰재심개시)	5402.43	반덤핑	'98.1.27	'99.12.6	7.06%~21.2%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05. 3월 일몰재심개시)	5503.20	반덤핑	'99.3.4	'00.3.13	11.9%~24.6%
폴리에스터 직조섬유사	5402.33	반덤핑	'99.3.4	'00. 6월	33.7%
폴리에스터 장섬유 직물	5407 일부	반덤핑	'99.11.1	'02.2.15	3.51%~40%
금속 드리사	5605	반덤핑	'04.2.7	'04. 9. 24	US\$2.2/kg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39076020	반덤핑	'04.12.9	-	-

- 2005년 상반기 중 신규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품목은 없음.
- 중국, 인도, 인니 및 대만산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 상기 국가들의 수출품이 터키 국산품과 가격 경쟁이 가능한 품목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특히, 2005년 1월 9일자로 중국산 섬유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여 42개 품목에 대해 쿼터를 부과하였음.

[멕시코]

- 2005년 6월 현재 2개 섬유제품이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유 형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조 치 내 용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반덤핑	'92.3.19	'93.1.21	'93.8.19	'03.8.20일기준 5년간 반덤핑 규제 연장
폴리에스터 합성 필라멘트	반덤핑	'99.12.22	'00.10.3	'01.6.22	반덤핑 관세부과 (16.03%)

- 2004년 들어 우리 상품에 대한 신규 수입규제는 없었으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국산 섬유류, 잡화, 신발류 등의 밀수 단속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통관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있어, 관련 품목의 수출이 다소 지연되는 경향이 있음.

[아르헨티나]

- 2005년 6월 현재 반덤핑 6건(조사중 2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품목별로는 철강 2건, 섬유류 3건, 석유화학 1건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유 형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조 치 내 용
냉연강판(CRS)	반덤핑	'01.7.19	'02.4.30	'03.1.8	반덤핑 관세부과 (60.46%)
아연철판 (Galvanized Steel Sheet)	반덤핑	'02.5.30	'02.12.16	'03.5.23	반덤핑 관세부과 (49.67%)
폴리에스터 단섬유	반덤핑	'01.5.21	'01.11.8	'02.11.12	반덤핑 관세부과 (US\$0.85/kg)
아세테이트 필라멘트 염색직물	반덤핑	'99.12.2	'00.11.23	'01.8.7	반덤핑 관세부과 (US\$8.73/kg)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직물	반덤핑	'04.2.23	-	-	-
폴리에틸렌 텔레프탈레이트 (PET)	반덤핑	'04.12.22	-	-	-

주 : 폴리에스터 직물 및 폴리에스터 수지(PET)에 대한 덤핑 혐의 조사가 이미 종료된 상태이나 현재까지 혐의 여부 판정이 나지 않은 상태임.

- 우리 수출 효자품목인 폴리에스터 직물에 대해서는 덤핑 혐의조사가 이미 종료된 상태이나, 우리 정부(산자부) 및 대사관측의 공세적 대응으로 반덤핑 판정 대신 양자간 가격인상(Price Undertaking) 협정을 맺는 것으로 대체기로 최근 합의

- 6월 13일부터 양국 정부간 가격 인상안 협상 중에 있음.

- 한편 지난해 12월말 조사가 개시된 PET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과 대사관측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예비판정에서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 2005년 상반기 중, 신규 대한 수입규제 조사개시는 이루어지지 않음.

[브라질]

- 2005년 6월 현재 반덤핑 1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HS 코드	유 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조치내용
나일론 6번사	5402.31	반덤핑	'00.1.12	'01.6.28	○ 반덤핑관세 :5.2%~52.2%

- 폴리에스터직물에 대해 2003년 1월부터 적용되던 수출 자율규제는 2004년 12월 31일부로 종료

- 최근 브라질 정부는 수출 확대 및 수입 관세 인하에 초점

- 수출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으며,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도 인하시키는 등 수출 확대 전략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과도한 국내기업 보호가 교역 확대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철강 등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을 중심으로 수입관세를 인하시키는 등 시장보호를 완화 시킨다는 방침

[이집트]

- 2005년 6월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취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1건뿐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HS 코드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조 치 내 용
타이어	4011.10, 4011.20	'98. 9월	'99.7.8	'99.7.13	반덤핑 관세 (5.5%~17%) '05.3.17일자로 '09. 10. 2까지 연장

□ 이집트는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규제 조치는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이집트 정부는 국내 산업에 피해가 우려되는 철근, 전구 타이어 등 극히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산발적인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 우리의 주된 수출 품목인 기계, 자동차, 화학, 전자제품 등은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으로 간주하여, 수입규제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음.

□ 現 이집트 정부는 자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점증하는 국제 통상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관절차 간소화 및 소형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인하 단행

○ 27개 카테고리 분류하여 수행하던 통관절차를 6개 카테고리로 단순화하고 적용세율도 대폭 낮춤.

○ 연간 6천만 불에 달하고 있는 1600cc 이하의 소형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대폭적인 관세 인하

[남아공]

□ 2005년 6월 현재 5건의 반덤핑 규제(조사중 1건)를 받고 있음.

○ 품목별로는 철강 2건, 석유화학 3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HS코드)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제소업체	비 고
스텐레스 용접관 (7306.40)	'98.7	'98.12 (무혐의)	99.6 (47.6%)	LG금속 (무혐의처리) 스미깁부산	일몰재심('03.5) 관세부과 연장('04.7)
카본블랙 (2803.00)	'98.8	'99.2	99.9 (40%)	거평, LG, 금호석유화학	일몰재심 통해 관세부과 연장('04.8)
Suspension PVC (3904.10)	'00.6	'00.12	01.6 (41.31%)	한화, 현대중합상사, LG상사	'06.6.15 관세 부과종료 예정
연선, 로프, 케이블 (7312.10)	'00.10	'02.3	02.9 (10.4%)	KIS WIRE (무혐의처리), DSR제강	
폴리에틸렌수 지용기(PET) (3907.60)	'05.4.	-	-	SK 케이칼 고합, 휴비스	신규 조사개시

주 : 규제형태는 모두 반덤핑임.

□ 2005년 상반기 중 1건 신규 반덤핑 조사 개시

- 품목은 PET로 불리는 폴리에틸렌수지용기(Polyethelene Terephthalate Polymer)용기로서 올해 4. 8일 제소되어 4. 19일자로 조사가 개시됨.
 - 우리나라 피소업체는 SK 케미칼, 고합, 휴비스 등 3개社이며, 남아공 제소업체는 SANS (Pty) Ltd, Horsaf (Pty) Ltd 등 2개 업체
 - 공동 피소국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등 6개국
- 동제품 반덤핑 혐의 조사개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상태임.
 - WTO 반덤핑 규정에 따르면, "1개 국가의 수출량이 제소국 총 수입량의 3% 미만일 경우에는 조사가 종결"되어야 함.
 - 남아공측 통계에 따르면, 2004년 기준 우리나라로부터의 동제품 수입물량이 557톤으로 남아공의 동제품 전체 수입물량(11,353톤)의 3%를 초과하나, 우리측 통계에 따르면 126톤으로 3% 미만임.

- 우리나라 외통부에서는 올해 6.28일 개최된 한-남아공 정책협의회에서 동건을 의제로 다루었으며, 향후 반덤핑 조사개시 과정에서 우리측 통계와 남아공측 통계를 모두 검토할 것을 요청
- 현재, 한-남아공 양측이 동 건에 대해 계속 협의 중임.

□ 2005년 상반기 중 총 4건에 대한 반덤핑 규제 종료

- 한국산 스테인레스 싱크대(2005.1.14)와 과산화수소(2005.3.3)에 대한 반덤핑 규제 종료(괄호 안은 종료일자)
- 광케이블과 스테인레스 주방용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는 2004년에 이미 해제됨. (참고 : 2004년 12월 말 대한수입규제 현황 집계시 누락)
- 남아공 무역위원회(ITAC) 관계자에 따르면, 두 품목 모두 재심절차를 거쳐, 광케이블은 2004.9월, 스테인레스 주방용품은 2004. 8월 관세 부과 철회

[뉴질랜드]

- 2005년 6월 현재 3개 품목에 대하여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음.
- 품목별로는 전기전자 3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목	HS 코드	규제형태	최종판정
냉장고	8418.10 등	반덤핑	'01. 6. 10
세탁기	8450.11	반덤핑	'01. 6. 10
오일필터	8421	반덤핑	'05. 1. 14

□ 2005. 1. 14일 한국산 오일필터에 대한 최종 덤핑 판정

- 뉴질랜드 경제개발부(MED)는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수출업체별로 종가세 기준(Ad Valorem) 12~155%의 반덤핑 관세 부과 확정

□ 뉴질랜드는 농·목축업 위주의 1차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공산품 수요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수입규제 조치를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인접국인 호주, 싱가포르 및 태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캐나다와는 이와 유사한 무역경제협력협정(TEC: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여 상당수 품목에 대해 무관세 혹은 특혜관세를 부여

[호 주]

□ 2005년 6월 현재 10개 품목이 반덤핑 규제(조사중 1건)를 받고 있음.

- 품목별로는 석유화학 5건, 철강 3건, 전기·전자 1건, 기타 1건 등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목	HS 코드	규제형태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 고
EPS	3903.11	반덤핑	'92. 1	'92. 11	'97. 1월 재심 '02. 9월 재심
PVC	3904.10	반덤핑	'99. 4	'00. 3	'05.9.14 관세부과 기간 연장여부 최종 판정예정
동관	7411.10	반덤핑	'00. 10	'01. 4	'04. 6. 28 재심개시 (능원금속 제외)
Polyols	3907.20	반덤핑	'01. 4	'02. 4.26	-
열연형강	7216.31 /32/33/40	반덤핑	'01. 11	'02. 7	'04. 3. 4 INI 스틸 요청으로 재심개시
세탁기	8450.11 8450.21	반덤핑	'02. 7	'03. 9	'04. 8. 31 재심개시

HDPE	3901.20	반덤핑	'02. 10	'03. 12	'04. 11. 4 재심개시 (대립제외)
LLDPE	3901.10 3901.90	반덤핑	'02. 10	'03. 12. 3	'04. 11. 4 재심개시 (현대석유화학 제외)
열연강판	7208.51 7208.52	반덤핑	'03. 8	'04. 4. 2	'04.9.9일자 공고통해 재심 개시(동국제강 제외)
백판지	4810.13.90 4810.19.90 4810.29.90 4810.99.00	반덤핑	'04.12.15	-	'05.5.19 최종판정예정 이었으나 지연되고 있음.

□ 2005년 상반기에는 신규 대한수입규제 조사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음.

□ 2005년 상반기 중 총 2건의 반덤핑 조사가 종료됨.

- HSS 강판(2004.12.23)에 대해서 2005년 4월 5일 산업무피해 판정과 동시에 조사를 종결
- 냉장고(2004.12.31)에 대해서는 2005년 6월 18일 덤핑 무혐의 판정으로 조사 종결

[중 국]

□ 2005년 6월 현재 對韓 반덤핑 규제는 총 22건(조사중 6건)임.

- 품목별로는 철강 1건, 석유화학 16건, 전기·전자 1건, 섬유류 1건, 기타 3건 등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유 형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판정내용
신문용지	반덤핑	'97.11.10	'98. 7. 9	'99 .6. 3	55~78%

폴리에스테르필름	반덤핑	'99. 3.16	'99.12.29	'00. 8.25 -'04.12.28 일몰재심 개시	13~46%
스텐레스냉연강판	반덤핑	'99. 6.17	'00. 4.13	'00.12.18	6~58%
염화메틸렌	반덤핑	'00.12.20	'01. 8.16	'02. 6.20	4~66%
폴리에스터단섬유	반덤핑	'01. 8. 3	'02.10.22	'03. 2. 3	2~48%
폴리에스터칩	반덤핑	'01. 8. 3	'02.10.29	'03. 2. 3	5~52%
아크릴레이트	반덤핑	'01.10.10	'02.12. 5	'03. 4.10	2~49%
아트지(동판지)	반덤핑	'02. 2. 6	'02.11.26	'03. 8. 6	4~71%
무수프탈산(PA)	반덤핑	'02. 3. 6	'03. 1. 7	'03. 9. 6	0~66%
합성고무(SBR)	반덤핑	'02. 3.19	'03. 4.16	'03. 9. 9	7~38%
PVC	반덤핑	'02. 3.29	'03. 5.12	'03. 9.29	6~84%
TDI (재심 개시 '05.2.3 requested by 제소자)	반덤핑	'02. 5.21	'03. 6.10	'03. 11.22	3~49%
페놀	반덤핑	'02. 8. 1	'03. 6. 9	'04. 2. 1	3~144%
클로로포름	반덤핑	'03. 5.30	'04. 4. 8	'04.11.30	96%
광섬유	반덤핑	'03. 7. 1	'04. 6. 16	'05. 1. 1	7~46%
히드라진 히드레이트	반덤핑	'03. 12.17	'04. 8. 3	'05. 6. 17	KOC : 28% 기타업체 : 35%
골판지	반덤핑	'04. 3. 31	'05. 5. 31	-	7.2~65.2%
비스페놀 A	반덤핑	'04. 5. 12	-	-	'05.5.12 조사 기간6개월 연장
EPDM	반덤핑	'04. 8. 10	-	-	-
핵 산	반덤핑	'04. 11. 12	-	-	-
ECH	반덤핑	'04. 12. 28	-	-	-
폴리우레탄(스판텍스)	반덤핑	'05. 4. 13	-	-	-

주: 냉연강판은 '04년 9월 10일 부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중지했으므로 피규제 품목서 제외

- 2005년 상반기 중 한국산 폴리우레탄(스판텍스)에 대하여 반덤핑 조사가 개시됨.

[2005년 상반기 對韓 신규 조사개시 현황]

품 목	HS 코드	규제형태	조사개시
폴리우레탄 (스판텍스)	5402.4920	반덤핑	'05.4.13

- 2005년 상반기에는 신규 수입규제 보다는 기초사 중인 품목에 대한 예비판정과 조사 기간 연장에 주력하고, 최근 중국산 제품이 섬유류를 중심으로 해외시장에서 수입규제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를 해결하는 데 보다 노력한 것으로 보임.
- 특히 미국과의 무역마찰 심화로 기타 국가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다소 소강상태인 것으로 풀이됨.

[일 본]

- 2005년 6월 현재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반덤핑 1건, 상계관세 1건(조사중 1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유 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 고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HS 550320)	반덤핑	'01.4.23	'02.7.27	○ 덤핑 마진 : 0-13.5% (2007.6.30까지) ○ 피소기업 : 삼영합섬, 성림, 대양산업, 휴비스 등
DRAM(하이닉스)	상계관세	'04.8.3	-	1년을 기한으로 조사중 단, 정식 조사개시가 아닌 사전 조사 성격

- 2005년 상반기 중, 한국 상품에 대한 신규 조사개시는 이루어지지 않음.
- 경제규제 완화, FTA 강화 등의 추세에 맞춰 수입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규제 완화 정책 추진

[대 만]

- 2005년 6월 현재 1건의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시멘트 1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조사개시	최종판정	반덤핑 관세율
Portland cement	'01. 6월	'02. 7월	110.99%~126.81%

- 2005년 상반기 중, 신규 對韓 수입규제 조사개시는 없었으나, 한국산 스테인레스 와이어 로드 에 대해 제소를 추진하는 움직임.
 - 燁興사 주장에 따르면 華新麗華 및 대만 철강협회와 함께 대만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함.
 - 그러나, 대만 정부 내 관련 조사부서 접촉 결과, 동 건에 대한 업계의 제소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등 업계와 정부 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음.

[인 도]

- 2005년 6월 현재 반덤핑 규제 16건(조사중 1건)과 세이프가드 1건 등 총 17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품목별로는 철강 1건 석유화학 13건, 섬유류 2건, 기타 1건 등임.
- 대한 수입규제 건수 감소 추세
 - '04~'05년도 신규 제소 건수가 1건으로 '02~'03년 6건, '03~'04년 4건에서 크게 감소하였으며, '05.4.1일 이후 현재까지 신규 조사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음.

[對韓 수입규제 현황]

구 분	품 목	규 제 내 역
반덤핑 규제중(15건)	NBR (Acrylnitrile Butadiene Rubb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코드 : 400259 ○ 96. 3 조사개시, 96. 12 예비판정, 97.7 최종판정, 01. 9 반덤핑 재심(유지) ○ 대상국 : 한국, 독일 ○ A/D관세 : 톤당 \$1,692.12-2,314.8과 수입품의 도착가격과의 차액 ○ 04.3월 중간재심 개시, 05.3.15일 중간재심 조사결과 공개 * 재심결과 : 금호석유화학 13.22%, 기타 한국 업체 48.75% 덤핑마진(금호 조사결과에 대해 바이어를 통해 법원에 제소, 적극 대응중)
	아크릴 단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코드 : 5501.30, 5503.30 ○ 96. 9 제소, 97. 10 덤핑관세, 00. 4 최종 판정 ○ 대상국 : 한국, 미국, 태국 ○ A/D관세 : \$0.16-0.366/kg ○ 2000.4월 중간재심 최종판정, 02.8월 일몰 재심 최종판정 ○ 반덤핑 관세 US\$0.225/Kg, 덤핑마진 16.53%
	SBR (합성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코드 : 400219 ○ 98. 4 조사개시, 99. 4 잠정관세, '99.8 확정관세 - '04. 7. 26일 재심결과, 기존 반덤핑 관세 유지 결정 ○ 대상국 : 한국,일본,대만,터키,프랑스,미국,독일 ○ A/D관세 : 0.92루피-10.57루피/kg ○ 03.7월 인도업체 일몰재심 조사 청원 ○ 04.7.28일 일몰재심 최종 판정 ○ 판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금호석유화학) 반덤핑관세 US\$0.0689/Kg, 덤핑마진 8.55% * 현재 1900시리즈 우리나라 수출물량 없음
	Sodium Cyani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코드 : 283711 ○ 99. 3 조사개시, 99.12 잠정관세, 00.6 확정관세

(NaC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국 : 한국, 미국, EU, 체코 ○ A/D관세 : 톤당 68,02루피와 수입품 도착가격 차이 ○ 04.3월 일몰재심 개시, 04.8.9일 공청회 개시
EPD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코드 : 400270, 400290 ○ 99. 8 조사개시, 00. 5 잠정관세, 00. 9 확정관세 ○ 대상국 : 한국 ○ A/D관세 : 톤당 2,418루피 ○ 02.12월 인도업체 요구로 재심 개시 ○ 중간재심 최종 판정 ○ 판정결과 : 반덤핑관세 US\$2,418.5/MT과 수입가격과의 차이
폴리에스터 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코드 : 392069 ○ 00. 3 조사개시, 00. 11 잠정관세, 01. 5 확정관세 ○ 대상국 : 한국, 인도네시아 ○ A/D관세 : \$0.356-0.982/kg ○ 04.10월 일몰재심 최종판정 ○ 판정결과 : 업체별로 US\$0.358/Kg-2.146/Kg
POY (Partially Oriented Yar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코드 : 540242 ○ 01. 8 조사 개시, 01. 11 잠정관세, 02.9 확정관세 ○ 대상국 : 한국, 터키 ○ 한국산(대한화섬, 제일합섬) 반덤핑 관세 : US\$0.605/Kg
PIB (Poly Iso-Butyl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코드 : 390220 ○ 01. 9 조사개시, 02. 1 잠정관세, 02.10 확정관세 ○ 대상국 : 한국,EU,태국,브라질,일본,싱가폴 ○ A/D관세 : 톤당 \$1,037.77과 수입품의 도착가격과의 차액
압연롤 (Forged Ro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품목 : HS845530 ○ 02.8 조사개시, 03.1 잠정관세, 03.8 확정관세 ○ 대상국 : 한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 A/D관세 : 톤당 \$2,851.91과 수입품 도착가격과의 차액
가성소다 Caustic So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코드 : 281511, 281512 ○ 02.5 조사개시, 02.12 잠정관세, 03.9 확정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국 : 한국, 중국 ○ A/D관세 : 톤당 \$295.27과 수입품의 도착가격과의 차액
	<p>소듐 아황산염 (Sodium Hydrosulphit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품목 : HS283110 ○ 02.11 조사개시, 03.4 확정관세, 03.12 확정관세 ○ 제조자 : Association of Synthetic Fibre ○ 대상국 : 한국, 독일 ○ A/D관세 : 톤당 \$1,034.76과 수입품의 도착가격과의 차액
	<p>탄산칼륨 (Potassium Carbonat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품목 : HS283640 ○ 02.12 조사개시, 03.6 잠정관세, 04.2 확정관세 ○ 제조자 : Gujrat Alkalies & Chemical Ltd ○ 대상국 : 한국 ○ A/D관세 : 톤당 \$9.45-123.86
	<p>염화 메틸 (Methylene chlorid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품목 : HS290312 ○ 03.2 조사개시, 03.10 잠정관세, 04.8.18 확정관세 ○ 제조자 : Gujrat Alkalies & Chemical Ltd, Chemplat Sammar and S.R.F Ltd. ○ 대상국 : 한국 ○ A/D관세 : US\$34.43/MT-42.42
	<p>프로필렌 글리콜 (Propylene Glyco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 code : 290532 ○ 대상국 : 한국, 싱가포르, 미국, EU ○ 제조자 : Manali Petrochemicals Ltd ○ 03.8 조사개시, 04. 8. 20 확정관세 부과 ○ A/D관세 : US\$1,221.38/MT과 수입가격과의 차액
	<p>폴리올 (Flexible Slabstock polyol :PP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 code : 390720 ○ 02.5 조사개시, 04.11.11일 최종관정 ○ 제조자 : Manali Petrochemicals Ltd ○ A/D관세 : US\$1,472.77/MT과 수입가격의 차이, 덤핑마진 : 37.01-56.87%
<p>조사중 (1건)</p>	<p>구연산 (Citric Aci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코드 : 291814 ○ '04.8.27 조사개시 ○ 05.3.29일 공청회 개최

SG 규제중 (1건)	녹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코드 : 110814, 110819, 190300, 350510 ○ 04.7.8 조사개시 ○ 05.2.16일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 최종판정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말류 세제품 중 Sago와 Modified Starches 을 제외한 Starch의 인도내 수입시 향후 3년 간 가격기준으로 1차년도 33%, 2차년도 23%, 3차년도 13%의 긴급수입관세 부과
-------------------	-----	---

- 2005년 상반기에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규 조사개시는 없음.
- 2005년 상반기 중 광섬유('04.12.29), 자동차용 배터리('05.1), 톨루엔 시안화나트륨('05.1)에 규제 종료
 - 광섬유는 만기종료, 자동차용 배터리는 중간재심 최종 판정결과 반덤핑 관세 철회, 톨루엔시안화나트륨은 원심 부정판정으로 종료

[인도네시아]

- 2005년 6월 현재 2건의 반덤핑 규제가 부과받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석유화학 1건, 제지류 1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목	HS 코드	규제형태	제소일	진 행 상 황
카본블랙	2803.00	반덤핑	'98.7.1	'04. 9. 16일자로 7~10%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
Uncoated Writing & Printing Paper	4802.52	반덤핑	'03.2.10	'04.11.11일부로 59.64%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

- 2005년 상반기 중, 신규 대한수입규제 조사개시는 없음.
- 2004년 중 2건의 반덤핑 규제가 종료됨. (2004년 집계시 미파악)

- 무수푸탈산(Phthalic anhydride, PA)에 대해서는 2003년 2월 최종 긍정판정이 났으나(애경유화 제외) 2004년 1월 인도네시아 주요 PA 생산업체 화재로 인해 생산능력이 급감하자, 규제가 철회됨.
- Coated writing and printing paper에 대해서는 최종무피해 판정 결과 2004년 7월 조사 종료
- 특정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보다는 인니 자국업계의 요청에 따라 일부 철강제품 및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수입관세를 인상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음.

[태 국]

- 2005년 6월 현재 2건의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제품 2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명	HS 코드	유 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조 치 내 용
열연강판	7208등	반덤핑	'02.7월	'03.6월	○반덤핑 관세율13.96% ○피소업체: 신한국업체
스텐레스 압연강판	7219.32 등	반덤핑	'02.11월	'03.3월	○반덤핑관세율 50.99% ○피소업체: 신한국업체

- 2005년 상반기 중 신규 수입규제 조사개시는 이루어지지 않음.
- 2004년 6월 25일 개시된 한국산 아질산염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제조철회(덤핑제품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미미)로 인해 2005년 2월 25일부로 조사 종료
- 저율 일반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열연강판의 수입 쿼터를 기존의 119만톤에서 170만톤으로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

- 국제 철강가격 급등에 따라 공급부족을 우려한 태국정부가 열연강관 (HS Code : 7208, 7211.13/14/19)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지난 3월부터 6개월간(2004. 3. 20 - 9. 19) 잠정 중단한 후, 부과 재개
- 태국 상무부는 태국의 4대 전략산업(자동차,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아연도금)에 있어서 철강 공급 부족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반덤핑 관세 면제 수입쿼터 확대 일정>

구분	1차년 (~'04.7)	2차년 (~'05.7)	3차년 (~'06.7)	4차년 (~'07.7)	5차년 (~'08.7)	합 계
기존(A)	470	380	240	90	10	1,190
변경(B)	470	448	460	285	37	1,700
증감(B-A)	-	68	220	195	27	510

자료원 : 태국 상무부

주 : 쿼터 내의 철강 수입에 대해서는 5%의 일반관세가 부과됨

- 태국 정부가 FTA를 대외 정책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함에 따라, 수입규제가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일부 산업 혹은 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소 요청이 있을 경우 반덤핑 조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

[말레이시아]

- 2005년 6월 현재 총 3건의 반덤핑 규제(조사중 1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제지류 1건, 석유화학제품 2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목	규제형태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 고
인쇄용지 (HS 4801.00)	반덤핑	'03.1.16	'03.9.26	○ 반덤핑 관세 : 43.24% ○ 피소업체 : 보워트-한라제지, 대한제지, 펜아시아제지, 세풍기
무수말레산 (HS 2917.14)	반덤핑	'04.6.10	'05.2.4	○ 반덤핑 관세 : 26.34% ○ 피소업체 : 용산화학주식회사
PET칩 (HS 3907.60)	반덤핑	'05.1.27	-	-

□ 2005년 1월 27일 한국산 PET 칩에 대한 조사 개시

○ MPI Polyester Industries Sdn에 의해 제소되어 2005년 1월 27일부로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6월 27일 예비 판정이 있을 예정.

- 최종판정은 예비판정일로부터 약 4개월 후 이루어짐.

[러시아]

□ 2005년 6월 현재 총 2건의 對韓 수입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1건의 반덤핑 규제와 1건의 세이프가드 규제(조사중)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목	규제형태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 고
electric filament lamps	반덤핑	'04. 9월	'05. 5월	20%로 수입관세 인상, 그러나 0.03Euro/1unit보다 높아야 함. ○HS 코드 : 8539.2290.10/90
Big-diameter Pipes	세이프가드	'05. 2월	-	조사중 ○HS 코드 : 7305, 7306

□ 2005년 중 1건의 신규조사가 개시

○ Big-diameter Pipes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되었는데 동 제품은 최근 현지 아파트, 오피스, 공장 등의 건설붐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품목임.

- 한국산 제품은 HS7305의 경우 '03년까지 수출량이 전무하다가 '04년 들어 금액규모로 U\$ 153만까지 수출량이 급증(수입시장 점유율 0.59%)하였고, HS7306의 경우 '03년 U\$29만(수입시장 점유율 0.48%)에서 '04년 U\$111만으로 급증(수입시장 점유율 1.18%, 전년 대비 수입증가율 276.5%)

- 한국산 제품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비교적 작지만, 급증하는 수출 증가율을 감안, 실제로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시 한국산 제품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백설탕(HS170111)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2005년 1월에 종결, 실질 규제가 발동되었으나, 한국산 제품의 수출실적이 미미하여 상기 집계에서는 제외

[파키스탄]

□ 2005년 6월 현재 총 2건의 반덤핑 규제(조사중 1건)가 이루어지고 있음.

- 품목별로는 석유화학 제품 1건과, 섬유제품 1건임.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 목	규제형태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 고
PVC resin	반덤핑	'04. 6. 26	'05. 2.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덤핑 관세율 : 40.18% ○ HS Code : 3904.1000 ○ 관세부과 기간 : 04.10.26일부터 5년간 ○ 피소업체 : LG International Corp. LG Chem, Ltd.
Polyester Filament Yarn	반덤핑	'05.5.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피소국: 인니, 말련, 태국 ○ HS Code : 54023300, 54024300 ○ 향후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판 : 조사개시 후 60~180일 이내 - 최종판정 : 예판 후 180일 이내

□ 2005년 상반기 중 Polyester Filament Yarn에 대해 신규 반덤핑 조사 개시

□ 최근 무역적자가 과거에 비해 대폭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규제 요구가 증가할 전망

- 현재까지 한국산에 대해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품목은 산업용 원자재이며 현지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상호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 것이 원인
- 향후 현지 산업이 성장하면서 섬유, 화학분야 등의 원자재가 수입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3. 2005년 하반기 수입규제 전망

가. 총괄

□ 2005년도 세계경제 성장세는 둔화될 전망

- IMF(2005.4)는 2005년 세계 경제가 4.3% 성장할 것으로 예측
 - 2004년의 5.1% 성장률보다는 낮으나, 최근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인 3.76%보다는 높음.

[세계 경제 성장률 추이]

(단위 : %)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평균치
3.6	4.1	4.2	2.6	3.7	4.6	2.5	3.0	4.0	5.1	3.76

자료원 : IMF

- 내수부진 타개책으로 수출 증가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음.
 - 2004년 31%의 기록적인 수출 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무역 흑자액이 전년대비 96% 증가한 U\$ 294억불에 달했으며, 2005년 1~5월 기간 동안의 무역흑자만도 101억 기록

□ 주요국별 하반기 수입규제 예상 품목

- 대체로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규제책 마련에 주력하여,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 압력은 상대적으로 완화될 전망
- 미국과 캐나다, 말린 등에서는 자동차, 중국에서는 화공품 및 철강, 남아공에서는 인쇄용지 및 벨브류, 호주에서는 석유화학제품 및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인도, 중남미 국가에서는 수입규제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

나. 주요국별 전망

[미 국]

- 경상수지 적자가 지난 4월 US\$ 570억,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음.
-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통상압력이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특히 1~4월 중 對中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대비 34.5% 증가
 - 美 의회는 위안화 재평가를 요구하며 Currency Act 등 저평가된 차액만큼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기틀 마련에 주력하는 등 대중 통상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음.
- 美 자동차 업계 부진으로 외국산 자동차, 특히 아시아산 자동차에 대한 위기감 고조
 - 미국 자동차 무역 위원회(Automotive Trade Policy Council)는 “일본의 환율조작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일본정부와 한국 정부가 환율 조작에 개입한 결과 아시아산 자동차가 미국 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
 - 미국 자동차 무역위원회는 美 재무부를 압박하여 일본 및 한국과 환율 관련 협상을 개시하고 , WTO IMF, 1988년 통상법을 통해 강력하게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임.

[캐나다]

- 캐나다 달러의 평가절상 현상으로 수출약세와 수입증가 지속되는 한편, 중국산의 국제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감 고조

- 현재 캐나다는 전반적으로 대외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 중국산의 국내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 섬유쿼터 철폐 이후 중국산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보호책을 요청하고 있음.
- 한국과 캐나다는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수입규제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최근 철강 수요 급증으로 인해 한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도 잇단 해제
- 다만 자동차 부품 등 일부업계가 한국과의 교역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캐나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2004년 기준 대한 무역적자 U\$ 27억 중 U\$15억 가량이 자동차 수입에 따른 무역적자임을 주장
- 자동차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제재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나, 자동차 산업은 캐나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한국산의 수입 증가에 대한 캐나다 업계의 반응을 지속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가 있음.

[E U]

- EU 헌법을 둘러싼 내부 문제로 인해 역외 통상압력 향방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는 상태
- EU 시민들에게 EU가 역내산업과 고용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어야 하므로 대외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과,

- EU 집행위가 최소한 올 하반기에는 EU 시민들에게 'EU 알리기' 홍보에 치중할 것이며 동시에 EU 헌법, EU 중기 예산과 같은 중요한, 그러나 회원국간 합의가 쉽지 않은 정치적 현안을 다루는데 집중할 수 밖에 없으므로 '외부에 시선을 돌리는 행위'인 대외통상에는 상대적으로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섞여있음

□ 중국이 지금까지보다 더 타겟 국가가 될 전망

- 중국이 EU의 수위 수입규제 대상국이라는 하나, 올 섬유.의류, 그리고 신발 수입쿼터 폐지로 인해 중국산에 대한 경계가 더 확산되면서 중국산에 대한 수입규제가 더욱 심해질 전망

□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 그간 반덤핑 조치에 치중해왔으나 섬유.의류, 신발 등 EU의 취약 산업의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고 있음
- 그 일환으로 세이프가드 조치의 사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수입감시 제도가 상반기 중 많이 활용되었음
 - 철강 수입감시제도 기한 연기(05.31에서 06.12.31로)
 - 신발 수입감시제도 신규 도입(중국산은 2.1부로 도입, 여타국가산은 늦어도 06.1.31일 이전 도입 예정 공표)

□ 반덤핑/세이프가드와 같은 직접적 수입규제조치와 아울러 수입관세 인상 효과를 갖는 조치도 병행 활용 가능성

- 홈시네마 기기 HS번호 재분류(2월)
- 오디오앰프, 라디오세트, 오디오기기, LCD 컬러모니터, 중앙처리장치에 대한 HS 번호 재분류(EU 관보 L 106, 4월 27일자)

- DVD 모듈에 대해 올 1월 1일부로 수입관세를 일시 면제해주기로 작년말 발표했으나, 최근 동 혜택을 철회, 7월 1일부터 정상관세율 5%를 적용하는 안을 추진 중

[중 국]

□ 건축기조 지속

- 중국은 철강, 자동차, 시멘트, 부동산 등 일부 업종의 과잉 투자로 촉발된 경기 과열로 2004년 4월부터 건축 선회를 공식화했으며 2005년 상반기 및 하반기까지도 이 같은 정책 기조는 계속될 전망
- 전반적인 내수 소비시장도 여전히 공급과잉 속에 소비 심리는 극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저가상품은 구조적으로 반덤핑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상존

□ 6월 초까지 중국산 섬유류를 둘러싸고 미국, EU와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임

- EU와는 6월 11일 극적인 섬유협상 타결을 보았으나 미국과는 여전히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음
- 중-EU 간 통상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로 국한되는 성격이 있는데 반해 중-미간 통상 문제는 정치적인 성격이 강해 중-미간 협상 노력이 중-EU의 경우처럼 쉽게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중국은 최근 일부 수입 품목에 대해 반덤핑 예비 판정과 향후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기간 연장 조치를 함께 발표해 과거와는 달라진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음

- 전반적으로 양국 정부의 정책 선회 가능성은 크지 않아 하반기에도 자존심 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 재래-침단 업종 모두 피소 가능

- 화공 등 재래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2005년 1월 1일에는 광섬유에 대한 최종판정을 통해 7~46%의 덤핑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침단 품목에 대해서도 덤핑조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침단 품목의 경우, 미국 업체를 겨냥해 반덤핑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한국 기업들이 한데 묶여 조사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

□ 한-중 무역불균형 추세

-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는 우리나라 통계 기준 시, 119.21억 달러(2000)→108.52억 달러(2001)→130.73억 달러(2002)→132.01억 달러(2003)→201.78억 달러(2004)로 급증해왔으며 2005년 1~5월까지 81.53억 달러로 전년 동기(83.56억 달러)보다 소폭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흑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 중국 측 무역통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한국의 흑자 폭은 더욱 커짐
- 최근 다소 줄어들었으나 중국이 무역불균형 해소 주장을 재개할 개연성이 상존해 이에 대한 체계적/합리적인 방어논리 확립 필요성이 여전
- 중국과의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을 미연에 방지해야 함

□ 최근 수출증가 품목으로써 규제 가능성 상존 품목

○ 화공품

- HS CODE 2단위 기준 우리나라의 대중국 3대 수출 품목이며 2004년과 2005년 1~5월 중 각각 54.8%와 46.9%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임
- 화공품은 전통적으로 반덤핑 조사가 자주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여타 품목 대비 규제 가능성이 가장 큼

○ 철 강

- 2004년까지는 규제 가능성 크지 않은 것으로 분류됐으나 최근 중국내 부동산 과열 단속을 통한 건축 수요 일시 감소로 재고가 늘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하반기 수출시 주의를 요함

○ 지 류

- 현재로서는 추가 규제 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상존 전망

[인 도]

□ 2004-05년도 인도의 GDP성장율은 7% 전후로 예상되고, 제조업생산 증가율도 8.3%로 전망되어 수년간의 경기확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경제 전반이 매우 양호한 상황

□ 다만 무역수지는 수출이 750억불(18% 증가), 수입이 980억불(26% 증가)로 예상되어 수지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자본수지 흑자로 외환보유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임

○ 또한 인도의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나, 이는

경기 활황에 따른 수요증가와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의 가격인상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수입규제 강화로 연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최근 철강 등 원자재의 국제가격 인상과 국내 수급불안, 석유화학
원료 등의 국제가격 강세 등으로 화학, 철강제품 등이 주요 수입규제
대상인 인도의 수입규제 우려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인도의 전체적인 반덤핑 규제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
면서 우리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남아공]

- 우리나라의 남아공 수출주력 품목은 주로 전자제품, 자동차, 기계류,
석유화학제품 등인데, 남아공 산업구조상 전자제품, 자동차, 기계류에
대한 수입규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석유화학제품의 경우는 지금까지도 많은 규제를 당해왔고
남아공 산업에서 석유화학업계의 비중도 높아 우리 수출이 급증할
경우 언제든지 수입규제를 당할 개연성이 있음.
- 올해 하반기에 수입규제가 예상되는 품목은 인쇄용지 및 밸브류임.
- 현재 우리나라 인쇄용지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남아공 업체
의 반덤핑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음.
- 관계당국 접촉결과, 아직 정식제소는 없었으나, 업체로부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업체의 입장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음.
- 밸브류의 경우도 현재 우리 수출이 급증하고 있고 남아공 밸브협
회에 정부에 자국산업 보호차원에서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
- 참고사항 : 중국산 섬유류 수입급증에 따른 세이프가드 발동 예상

- 현재 남아공 섬유업계는 중국제품의 시장장악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남아공 정부에서도 자국 섬유산업 보호를 위해 상무부에 섬유산업 보호를 위한 “Technical Task Team”을 설치할 정도로 중국산 섬유제품 수입급증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 남아공 상무부 담당자 접촉결과,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Specific Safeguard)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중남미]

- 2005년도 하반기 중남미 국가의 對韓 수입규제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음.
 - 섬유류 및 신발류를 비롯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에 주력
 - 다만 멕시코에서는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가능성이 있음.

<아르헨티나>

- 한국산 제품의 대 아르헨 수출이 급증하는 품목은 있으나, 양국 전체적으로 아르헨이 출초를 유지하고 있으며, 업종별 협회측이나 언론 매체에서 한국산 제품의 수입 급증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음
 - 아르헨 업계나 언론의 관심은 브라질산 및 중국산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수입이 확대되어도 수출용 원부자재 및 중간재와 기자재 등의 수입확대에 대해서는 수출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소비재의 경우에도 아르헨 국내 제조기업의 가격인상 억제를 위한 대응수단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면도 있음.

- 아르헨 정부가 대한국 최대 통상현안으로 삼고 있는 수입쇠고기에 대한 검역조건 완화 요구가 조기에 관철되지 않고 대한국 무역흑자는 크게 줄어들 경우 한국산 가전제품 등에 대한 수입규제를 해올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음.

<브라질>

- 2005년 4월말 현재 브라질의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9.3% 증가한 337억불을 기록한 반면,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9.6% 증가한 215억불에 그쳐 무역수지 흑자가 122억불을 기록
 -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 수입규제 예상품목
 - 브라질 정부는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산 섬유류 등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강구 중에 있으나 한국산의 경우 수입규제 가능성이 낮음.

<멕시코>

- 최근 석유화학, 플라스틱 산업 부문 제조업체들이 수입 급증에 따른 자국 산업 경쟁력 약화를 호소하고 있으며, 생산설비 투자확대, 에너지 부문 공급체계 개혁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멕시코 대규모 석유화학 프로젝트 "EL FENIX"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석유화학제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멕시코 섬유 및 의류, 신발, 가구, 장난감 부문의 경우, 중국산 저가제품 유입 및 밀수품 범람으로 멕시코 국내산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어 국내업체는 존폐의 위기 상황으로 간주하고 있음.

- 멕시코 정부는 의류, 신발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5년부터 동 부문 원자재 관세 인하 및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 관련 업계에서는 수입급증으로 인한 자국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주장하면서 동 제품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 멕시코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비관세 장벽 및 통관시스템 검토를 통해 비효율적인 통관제도를 전격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최근 멕시코 정부의 수입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하반기에도 신규 수입규제 건이 크게 증가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됨.

[호 주]

- 미국, 태국과의 FTA가 발효함에 따라, 호주의 제조업계는 경영환경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며, 이에 대한 호주업체의 자구책으로 반덤핑 제소는 급증할 것으로 예측됨.
- 철강제품, 석유화학제품에 집중되던 호주의 반덤핑 제소가 가전, 종이제품 등 다른 공산품으로까지 확대되고 있고, 기존 덤핑 관세 부과 품목의 시한이 만료되더라도 5년 단위의 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석유화학제품과 철강제품은 여전히 반덤핑 피소대상 1,2위 품목으로 예상되며, 가전제품 및 자동차용 타이어와 신문용지 등도 언제든지 피소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말레이시아]

□ 수입규제 예상 품목

- 말련 국영 자동차기업인 Proton의 고문이자 전 수상이 마하티르는 일부 국가가 제조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으며, 나집 라작 부총리도 외국 자동차들의 덤핑 판매로 국산차 시장을 침해하고 있는 점을 우려
 - Proton과 Perodua 2개 현지 자동차는 시장 점유율이 2003년 69.4%에서 2004년 59.6%로 10% 가까이 하락한 반면, 일본과 한국은 2배 이상 점유율을 확대(한국의 대말련 자동차 수출 증가율은 50%를 상회)
 - 한국, 중국이 정상가 이하로 수출하고 있는 나라로 의심받지만 특히, 한국의 완성차 수입이 가장 많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한국의 대 말련 수출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낮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음.
 - 자동차는 정치적 영향이 큰 분야이고, 한국 자동차도 완성차 수출보다 현지 생산 물량을 확대하고 있어 쉽게 규제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겠지만, Proton의 위기가 지속되고 한국차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늘어난다면 제재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첨부

<국별 수입규제 현황표>

(2005년 6월 30일 현재)

국 가	반덤핑	상계관세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합 계
미 국	14(1)	1	5		20(1)
캐나다	2				2
EU	11(2)	1			12(2)
터 키	6(1)				6(1)
멕시코	2				2
아르헨티나	6(2)				6(2)
브라질	1				1
이집트	1				1
남아공	5(1)				5(1)
뉴질랜드	3				3
호 주	10(1)				10(1)
중 국	22(6)				22(6)
일 본	1	1(1)			2(1)
대 만	1				1
인 도	16(1)			1	17(1)
인도네시아	2				2
태 국	2				2
말레이시아	3(1)				3(1)
파키스탄	2(1)				2(1)
러시아	1			1(1)	2(1)
합 계	111(17)	3(1)	5	2(1)	121(19)

주 : ()안은 현재 조사중인 건수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표]

(2005년 6월 30일 현재)

국 가	철강	석유화학	섬유류	전기전자	기 타	합 계
미 국	14	2	1	1	2	20
캐나다	2					2
EU	3	2	1	6		12
터 키		1	5			6
멕시코			2			2
아르헨티나	2	1	3			6
브라질			1			1
이집트					1	1
남아공	2	3				5
뉴질랜드				2	1	3
호 주	3	5		1	1	10
중 국	1	16	1	1	3	22
일 본			1	1		2
대 만					1	1
인 도	1	13	2		1	17
인도네시아		1			1	2
태 국	2					2
말레이시아		2			1	3
파키스탄		1	1			2
러시아	1			1		2
합 계	31	47	18	14	11	121